

HRD직업능력혁신원 운영 규정

제정 2020. 02. 1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원은 상지대학교 부설 HRD직업능력혁신원(이하 “직업능력혁신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설립목적)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직업능력혁신원은 상지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생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2. 국가기술자격취득 과정
3. 직업능력개발 과정
4. 기타 직업능력혁신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원장) ① 직업능력혁신원에는 원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직업능력혁신원을 대표하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원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교직원) 직업능력혁신원에는 교학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 직업능력혁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위원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4. 수강인원 및 학습비·강사료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직업능력혁신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의결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1조(교육과정) 직업능력혁신원은 제2조 설립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 과정
2. 직업능력개발 과정
3. 교내·외 위탁 연계 교육과정
4. 기타 직업능력혁신원의 설립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제12조(모집 및 수업기간) 모집 및 수업기간은 각 과정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수업) 직업능력혁신원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지원자격) 직업능력혁신원의 각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성인으로 하며 그 밖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한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선발방법)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설치과정) ① 설치과정 및 수강인원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8조의 학습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은 매학기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제17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② 정규과정 이외 교육과정의 강사료 및 강의 관련 제반 비용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학습비) ① 직업능력혁신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폐강, 과오납 등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제19조(공개강좌) ① 직업능력혁신원에는 별도의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평가주기 및 활용) 직업능력혁신원 만족도 조사 평가는 교육만족도 조사규정 제4조(조사시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

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

제21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수강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22조(수강생활동의 금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강을 불허할 수 있다.

1.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이나 기타 불온한 목적을 위하여 수강하는 경우
2.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수강생으로서의 품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24조(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①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 해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25조(결산 및 사업보고) 원장은 직업능력혁신원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수입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생의 수강료
2.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보조금
3. 외부 찬조금
4. 기타 수입

부칙 (기획예산팀-97, 2020.02.12.)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